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CP 운영 규정	개정번호	8
		쪽번호	1 / 9

CP 운영 규정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CP 운영 규정	개정번호	8
		쪽번호	2 / 9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자율준수관리자

제 3 장 임직원

제 4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부 칙 (시행일)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CP 운영 규정	개정번호	8
		쪽번호	3 / 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대림(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의 각 임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이하 'CP'라 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 (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 한다. 단,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의 임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개정)일: 2022년 2월 21일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CP 운영 규정	개정번호	8
		쪽번호	4 / 9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
2.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3. 내·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솔선수범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 계획 수립
2. CP의 운영, 평가 및 감사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감사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자율준수 관련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 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8. 자율준수 활동 계획과 활동 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개정)일: 2022년 2월 21일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CP 운영 규정	개정번호	8
		쪽번호	5 / 9

제 9 조 (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내·외부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율준수 전담부서)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를 주관한다.

제 3 장 임직원

제 11 조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업무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2 조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관계법령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편람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8
	CP 운영 규정	쪽번호	6 / 9

제 13 조 (모니터링)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준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모니터링 요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사실 발견 시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 및 부서 내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질의/자문 또는 협의 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이에 대한 답변 또는 해결 방법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와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제4항의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별한 후 각 부서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등급(상/중/하)으로 분류하고, 그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하여 CP 주관부서를 통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최소 연 2회 이상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7. 점검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준수관리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확인된 개선사항을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CP 교육을 담당할 강사 선정 시에는 CP분야의 전문 지식,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3. CP 교육 진행 후에는, 해당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되, 참석률, 이수율, 학습자 만족도, 불만(개선)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해당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개정)일: 2022년 2월 21일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8
	CP 운영 규정	쪽번호	7 / 9

제 15 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1.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직원에 대한 장려조치)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법령 준수에 모범이 되는 행위 및 제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17 조 (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8 조 (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 1회 이상의 정기 CP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불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른 CP 운영 성과 평가를 진행할 경우, 그 평가 업무 담당자는 공정거래법규 관련업무 경험, 감사 업무 수행 경험, 관련 자격증 등 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4. CP 운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차년도 CP운영계획 및 전략과제 등에 반영한다.

제 19 조 (CP운영 계획 수립)

1. 매년 CP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CP운영 계획 수립 시에는 CP운영 예산, CP교육계획, 포상 방안 등을 같이 수립한다.

시행(개정)일: 2022년 2월 21일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개정번호	8
	CP 운영 규정	쪽번호	8 / 9

제 20 조 (내부거래 심의)

1.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품·용역거래, 자금거래, 자산거래, 유가증권 거래, 공동사업 등 모든 내부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단, 경쟁입찰에 의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자율준수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자율준수 주관부서가 특별히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판단한 경우가 아닌 한,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해당 내부거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팀은 자율준수전담부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자율준수전담부서는 해당 요청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협의체 / 내부거래위원회 중 적절한 심의 방법을 결정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3.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4.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협의체에서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진행한다.

제 21 조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

1. 내부거래 협의체는 자율준수 주관부서, 법무 주관부서, 기획 주관부서, 회계 주관부서, 재무 주관부서, RM 주관부서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한다. 팀장 부재 시에는 각 팀의 차상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2. 내부거래 협의체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 결과를 내부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결과를 사업팀에 통보한다.
4. 사업팀은 내부거래 계약 승인 품의 시 반드시 내부거래심의 결과를 기안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5.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제보 시스템)

1. 회사의 임직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상황에 처한 경우, 또는 다른 임직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보하여야 한다.
2. 법령 위반 행위나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는 제보시스템 [홈페이지/그룹웨어 사이버신문고 및 전용 Hot_Line(메일/전화)]으로 할 수 있다.
3.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관련 내용은 제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난 후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시행(개정)일: 2022년 2월 21일

DAELIM	규정 [사외비]	제정일	2007.06.01
	(주)대림 CP 운영 규정	개정번호	8
		쪽번호	9 / 9

하며 또한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른다.

5. 제보를 통해 회사의 손실을 예방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23 조 (운영 보고)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 관리자 및 대표이사에게 CP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보고사항 발생시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2. 자율준수 관리자는 CP운영 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정기적(반기 1회)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그룹웨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위 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1. 이 규정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개정)일: 2022년 2월 21일